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,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며 의원 윤리강령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(안 제1조)

나. 의원 윤리강령을 현실에 맞게 정정(별표)

다. 인용법령 명에 낫표 표시(안 제3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38조, 공직자윤리법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다. 기 타
1) 개정조례 안 : 붙임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 본문중 “지방의회의원은”을 “의원이”로, 제1호중 “지방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, 제7호중 “공직자윤리법”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, 제2항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의”로, “지방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의 ----------.
제2조(윤리강령) (생 략)	제2조(윤리강령)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삭 제)
제3조(윤리실천규범) 지방의회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	제3조(윤리실천규범) 의원이 ----------.
1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1. ---------- 의원 ----------.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	7. 「공직자윤리법」 ----------.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윤리심사 등) ①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	제4조(윤리심사 등) ①의원 ----------.
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②제1항의 ---------- 의원 ----------.

【별표】

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

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,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,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.

1. **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**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,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.

2. **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**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
3. **우리는 의원으로서**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,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.

4. **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**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,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.

5. **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**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.